

고령화계획의 전환기를 맞이하며

Coming the Turning Point of Aging Design

菅野 實

KANNNO MINORU

회고와전망

일본의 고령화대책은 1963년도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21세기의 초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본격적인 고령화계획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1982년에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여러가지 새로운 서비스메뉴가 계속해서 등장해 왔다. 1990년대에는 복지관련8법이 개정되어, 시정촌단위(市町村, 일본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의 시읍면에 해당)로 노인보건복지계획(1994년)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1997년 케어보험의 제정(실시는 2000년부터)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고령화를 앞에 두고 급격히 고령화 대책의 전체틀을 마련, 노력해 온 20년 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각 市町村은 각자의 재정에 맞추어 대책마련과 인재육성 등의 각종 서비스 정비에 노력해 왔다. 그 이전의 서비스는 상당히 빈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할수록 고령화사회 문제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 市町村은 요구의 충족과 조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계획목표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2005년 2월 25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실린 것이 눈에 띈다.

“특별양호노인홈, 입소대기자 늘고 있는 중”, “후생성, 지속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독거노인 5(총 6단계로 1~5)이어서도 입소대기자중/모친을 언젠가는 학대할 듯한 실정”, “양질의在宅개호 어려워”...

요약하면, 고령자보건복지계획에 따라 서비스의 정비를 추진해왔지만在宅서비스가 계획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특히, 특별양호노인홈의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센다이시의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대기자수는 3,428

명(그 중에서 5의 대기자는 658명)으로 총고령자수 약 15만명 중,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기자수는 고령자보건복지계획(1994년)당시 책정한 특별양호노인홈과 노인보건시설(이 둘은 대표적인 입소 시설임)을 합한 입소정원이며, 지금까지 정비해온 것과 같은 양의 입소대기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정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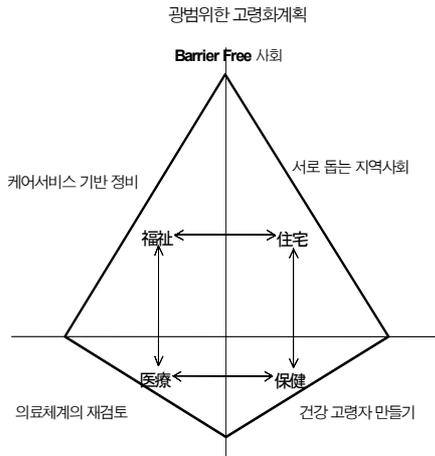
일본의 고령화계획 모델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복지를 기반으로 한在宅서비스를 중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복유립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후생성에서는 현행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령자가 개호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사업”의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구단위의 친근한 생활권별로 기존의 복지시설과 연계시켜 24시간 365일 가정봉사원을 파견, 소수의 사람을 숙박도 시킬 수 있는 지역거점을 기존건물의 개수 등으로 마련, 보다 세심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고령화계획은 커다란 전환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분히 지금까지의 고령화계획의 문제점을 총괄하여 초고령화시대에 대응해 가고 있다고 본다.

Ⅰ 일본 고령화계획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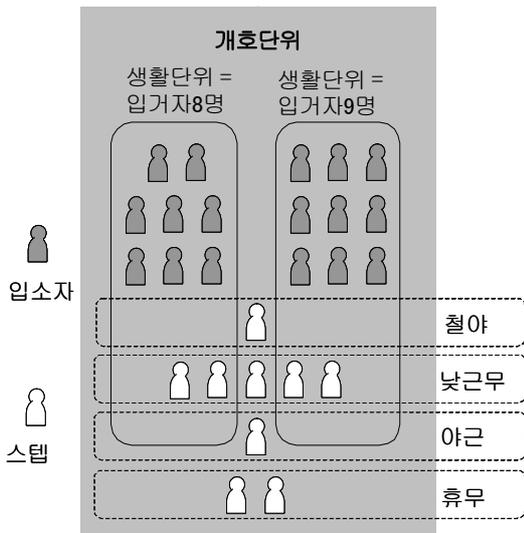
- ① 시설서비스의 문제
 - 증대하는 특별양호노인홈의 대기자수
 - (지역적 편재) 살아온 정든 곳에서 계속 살 수 없다.
- ② 서비스의 諸문제
 - 서비스이용이 생각처럼 늘지 않는다.
 - 24시간 365일 계속되는 서비스가 필요
- ③ 재정 문제
 - 개호보험의 재원 부족
 - (시설)서비스 이용료(방세 식대)의 자기 부담 증가

② 일본의 광범위한 고령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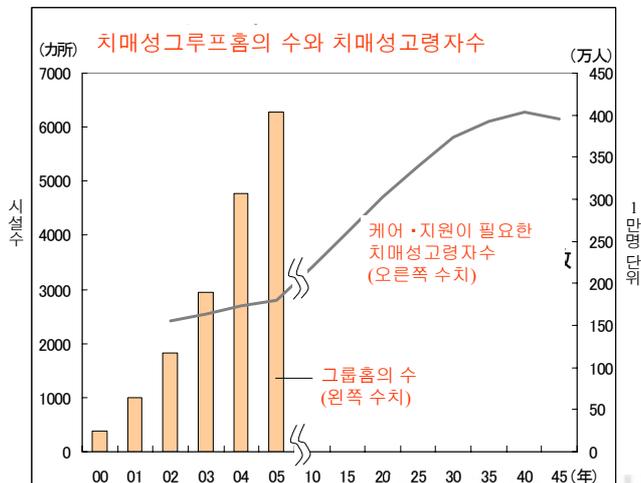


③ 유닛케어에 있어서 케어단위와 생활단위

---- 스태프기준 (입주자 : 스태프=1.9:1)



④ 일본 치매그룹홈의 수와 치매성고령자수



⑤ 골드프랜21의 2004년 정비목표량

구 분		수 ()안은 고령자 1만명 당
訪 問	가정봉사원의 수	350,000人 (140인)
	방문스테이션	9,900ヵ
通 所	주간보호시설 (초등학교 수와 거의 같음)	26,000ヵ所
短期入所	단기보호시설	96,000床 (38병상)
施 設	특별양호노인홈	360,000床 (144병상)
	노인보건시설	297,000床 (118병상)
生活支援	치매성그루프홈	38,400人 (15인)
	케어 하우스	105,000人 (42인)

⑥ 「지역밀착형서비스, 「다양한 고령자주택」전개

- ①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케어서비스
 - 「통원」 + 「방문」, 「숙박」(「거주」)
- ② 지역야간방문케어서비스
 - 기본적으로 「재택」중시 :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과제
 - 오래 살던 정든 곳에서의 생활을 24시간체제로 지원
 - 일상생활권역내에 서비스거점을 확보
 - 신설보다도 기존시설을 개수

⑦ 고령화계획의 변천

<p>노인보건법(198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6 노인보건시설/지역고령자주택계획 '87 고령자 종합상담센터 '88 실버하우징 프로젝트/노인성 치매질환센터/노인성 치매질환 치료병동/노인성 치매질환 데이케어 '89 골드프랜/케어하우스/건강장수 마을만들기
<p>복지관련8법 개정(19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고령자 생활복지센터/재택개호 지원센터/노인성 치매질환 요양병동/노인보건시설 치매전문동 '91 공영주택 고령화대응 '92 요양형병상군/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개호전문형 유료노인홈 '94 노인보건복지계획/신 골드프랜
<p>케어보험법(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 치매성고령자 그룹홈/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00 케어보험법 시행/골드프랜21 '01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법 '03 신형 특별양호노인홈